

##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? **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세요.**

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의 개선(재무상태 개선, 신용도 상승 등)이 있는 경우,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13 에 근거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**금리인하 요구권이란?**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※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13(금리인하 요구)

**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대출 ?** 오토론/할부 ※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(1688-9328)로 문의

### 금리인하 요구 요건 ?

개인 사업자대출	
소득·재산 증가	• 소득 증가(취업, 승진, 이직, 전문자격 취득 등)나, 재산 증가(자산 증가, 부채 감소)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신용도 상승	•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
기 타	•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•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
기업대출	
재무상태 개선	• 이익 증가,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
신용도 상승	• 회사채(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)등급상승, 추가담보 제공,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기 타	•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•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

**신청방법 ?** 고객센터 (1688-9328 ) 혹은 담당 금융컨설턴트에게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.  
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전화, SMS 등을 통해 신청 결과 안내 ※ 여신전문금융업법  
시행령 제 19 조의 18 에 따라,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(단,  
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된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)

**유의사항 ?**

-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